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기 관 의 장
람	



제 726 호 2011. 12. 16(금)

공 고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11-776호[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2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776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2월 16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**「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」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불가안정 경제에 따른 시방공공요금 인상폭 축소 및 분산방안에 따라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 시행시기 조정 추진

2. 주요내용

- 부칙 <조례 제626호, 2011.12.15> 개정
조례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부칙 중 “2012년 1월 1일”을 “2012년 7월 1일”로 한다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(참조 : 환경의생과장)에게 전화(052-219-7372), FAX(052-219-7379)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기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의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